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 영 일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국민참여재판에서 나타나는

배심원 판단편향:

검사구형량과 정박효과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이 유 미

국민참여재판에서 나타나는

배심원 판단편향:

검사구형량과 정박효과

조 영 일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이 유 미

인 준 서

이유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릴 때 외부에서 주어진 정보의 영향을 받아 그 정보의 근사치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판단이 최초의 기준점에 묶이는 인지적 편향을 정박효과(anchoring effect)라고 한다. 사법적 의사결정 상황에서는 정박효과가, 검사구형량이 정박점으로 작용하여 최종 판결되는 양형이 검사구형량과 유사해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양형을 결정할 때 저지를 수 있는 정박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박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밝히고 정박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참가자는 배심원 자격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1에서는 범죄사건의 경중과 정박크기에 따른 정박효과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중범죄사건에서 경범죄사건에 비해 정박효과가 유의미하게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정박크기에 따른 정박효과의 차이는 경범죄사건에서만 유의미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경범죄사건의 저정박 조건에서 고정박 조건에 비해 정박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범죄사건을 판단하며 판단자가 느낄 수 있는 정서상태에 따라 정박효과가 달라짐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분노정서를 느낄 때 슬픔정서를 느낄 때보다 정박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 3에서는 정박효과의 메커니즘 중 하나인 접근가능성 모델의 활성화를 방지할 때, 정박효과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배심원제도의 정박효과와 관련된 문제점을 줄이고 국민참여재판의 발전과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판단편향, 정박효과, 사법적 의사결정, 배심원 의사결정,
국민참여재판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이론적 배경	6
1. 사법적 의사결정과 판단편향	6
2. 정서 상태와 판단편향	12
3. 사법적 의사결정과 정박효과	16
1) 정박효과를 강화시키는 요인	17
2) 정박효과를 약화시키는 방안	20
III. 연구 문제 및 연구 가설	23
IV. 연구 방법 및 결과	25
1. 연구 1	25
1) 연구 참가자	25
2) 실험도구	25
3) 절차	27
4) 결과	28
2. 연구 2	32
1) 연구 참가자	32
2) 실험도구	32
3) 절차	34
4) 결과	34
3. 연구 3	37

1) 연구 참가자	37
2) 실험도구	37
3) 절차	38
4) 결과	39
 V. 논의	 42
1. 결과해석 및 의의	42
2. 후속연구 제안	46
3. 종합논의 및 결론	49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차

표 1. 정박조건에 따른 심각성 점수와 최종 양형의 평균과 표준편차	28
표 2. 양형과 정박점 간 거리	29
표 3. 정서조건에 따른 심각성, 양형, 거리값의 평균과 표준편차	35
표 4. 각 조건에 따른 심각성, 양형, 거리값의 평균과 표준편차	39
표 5. 각 조건에 따른 거리값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40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설계 모형	19
그림 2. 경범죄 시나리오와 중범죄 시나리오에서 정박크기에 따른 정박효과의 차이	30
그림 3. 슬픔조건과 분노조건에서 정박효과의 차이	36
그림 4. 조정주의, 주의, 무주의 조건의 정박효과의 차이	4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기 영국드라마 「셜록」에서는 셜록의 적수 모리아티가 재판관을 받게 되자 배심원들을 협박하여 자신에게 무죄평결을 내리도록 만드는 장면이 나온다. 이와 같이 외국 영화, 드라마에서나 종종 접할 수 있던 배심원 제도는 2008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62호)”에 의해 2008년 1월 1일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으며¹⁾,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으로 선정된 시민은 직접 공판에 출석하여 법정 공방을 지켜보고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와 적절한 양형에 대해 논의한 후에 의견을 제시하며,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결정을 참고하여 최종 판결을 내린다.²⁾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전통적으로 헌법상 신분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법관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었다. 즉, 재판의 판단과정과 최종 판결은 법관의 권리였으며 일반 국민들은 평결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법원행정처,

1) 2005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일부 조항이 삭제 및 수정되어 총 60개조로 구성된 참여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7. 6. 1. 공포되었으며 시행일은 2008. 1. 1로 정하여졌다. 그러나 2008년의 법안은 과도기적 입법이었으며, 2013년에 지난 5년간의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운영 성과를 반영하여 최종 형태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민사법참여위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2) 영국과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통적인 배심제는 배심원이 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 판단을 내리고 법관이 그 평결에 따라야 하는 제도이다. 이 때 배심원의 유·무죄 의견은 절대적이며 양형은 법관이 결정한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는 참심제는 참심원이 법관과 함께 재판부 일원으로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협업하여 판단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를 적절하게 수정하고 혼합하여 만들어졌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하여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나,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법관의 의견을 듣고 다수결로 평결을 내리게 된다. 또한 배심원은 직접 양형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며 이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다(박홍규, 2014; 법원행정처, 2007).

2007). 사법정책의 대상자가 판결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됨으로써 국민들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재판결과에 의문과 불만을 갖게 되었고(홍수민, 이수정, 이정현, 2013), 결과적으로 사법정책의 정당성과 신뢰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재판의 결과와 국민의 정서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은 범죄사건을 다룬 기사와 그에 대한 댓글 등 언론과 여론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법원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10점 만점 중 4.3점으로 매우 낮다는 조사에서도 드러난다(한국개발연구원, 2006).

Doob과 Roberts(1984)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문 기사를 읽고 범죄사건의 재판결과에 대해 평가하게 하였을 때에는 64%가 양형이 관대하다고 평가하였으나, 법원 기록을 읽게 하였을 때에는 19%만이 양형이 관대하다고 평가하였다. 국민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여 자세하고 실제적인 재판정보를 접할 수 있다면, 재판결과와 국민의 정서가 일치하게 되고 판결에 대한 불만이 감소할 뿐 아니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사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시민들의 사법참여 열망이 높아짐에 따라, 사법제도개혁위원회의 추진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었다(법원행정처, 2007). 이후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9)에서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실제로 배심원 참여 이후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답한 사람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이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고 사법제도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 또한 제기되고 있다(김병수, 2010). 특히 배심원들이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오류의 위험성이 있으며, 따라서 배심원이 양형을 판단하는 절차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김대성, 2012; 박형관, 2012; 조인현, 2013). 그러나 이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

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의사결정은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판단으로 나뉜다. 유·무죄 판단은 사실관계를 따져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양형판단은 유죄로 판결된 피고인에 대해 형의 종류와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양형을 판단하는 절차는 유·무죄 판단 절차와 달리 고도의 법률문제를 다루며 더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김대성, 2012; 최수형, 2011). 그런데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양형에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형판단 절차가 부담이 되거나 어렵게 느끼고(최수형, 2011) 결국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박형관, 2012).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의 평결은 법관에 대한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93.2%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배심원의 양형의견과 재판부의 선고 양형이 일치하고 있다(법원행정처, 2016). 이는 대부분의 재판부가 배심원 평의의 결정을 따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의 배심원 평결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도 최종 선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판단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민사재판에서는 신청할 수 없으며 형사재판에 대해서만 활용된다.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형을 결정해야 하는 형사재판에서 잘못된 평결이 내려진다면, 피고인이 무고하게 처벌을 받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한 예로, 2016년 2월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에게 배심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1심의 배심원 판결을 뒤집고 유죄판결을 내렸다.³⁾ 이는 범죄로 인한

3)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136 살인사건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선고받지 못한 사례이다. 공정하지 못한 판결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의 인생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배심원들의 합리적인 판단은 국민참여재판의 중요한 전제가 되며, 이는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시행과 존속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들이 양형판단을 내릴 때 일어나는 판단편향과 편향 감소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법정상황에서 나타나는 판단편향 중 정박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박효과(anchoring effect)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할 때 외부에서 주어진 숫자정보에 영향을 받아 그 숫자 근사치의 판단을 내리게 되는 현상이다. 형사재판은 검찰 측 최후진술, 변호인 측 최후진술, 피고인의 최후진술의 순서로 마무리되는데, 이 때 검찰 측 최후진술에는 구체적인 형벌과 형량을 요구하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 법정상황에서의 정박효과는 판사나 배심원의 최종 양형판단이 검사 구형의견에 영향을 받아 그 근처의 값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Englich & Mussweiler, 2001; Englich, Mussweiler, & Strack, 2006; Guthrie, Rachlinski, & Wistrich, 2002).

국민참여재판은 처음 도입되던 2008년에 64건이 시행되었고 이후 해마다 점점 증가하여 2013년에는 345건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2013년을 기점으로 2014년에는 271건, 2015년에는 203건으로 시행 건수가 소폭 하락하였을 뿐더러(법원행정처, 2016), 아직 전체 재판 건수의 1% 미만에 머물고 있다(박홍규, 2014). 국민참여재판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계속 제기되고 있는 배심원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사법적 의사결정 시 나타나는 판단편향 중 하나인 정박효과에 대해 검증하였다. 재판 시나리오에서 정박효과가 나타남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은 많

았지만, 선행연구들에서는 하나의 범죄 유형의 시나리오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범죄 유형에 따른 정박효과의 비교가 불가능했다. 즉 판단편향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양, 인지적 부담, 심리적 책임감 등은 범죄의 유형 또는 경중에 따라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범죄와 관련된 재판을 지켜볼 때에는 특정한 정서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 재판 시 유발되는 정서와 정박효과에 대해서도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법적 의사결정 상황에서 정박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범죄사건의 경중과 재판동안 겪을 수 있는 정서 상태에 따라 정박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정박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탐색하고 논의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사법적 의사결정과 판단편향

사법적 의사결정은 다양한 심리적 요소들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안대희, 2010). 예를 들어, 법정상황에서 판단자에게 작용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인종, 매력, 성별 등의 피고인 특징(Desantts & Kayson, 1997), 과거 이력 및 경험 등의 피해자 특징(이지혜, 박우현, 이수정, 2014), 법관의 사상과 가치관 등 법관의 특징(안대희, 2010), 법정 공방 시 사용되는 진술의 문법적 표현(Schmid, Fiedler, Englich, Ehrenberger, & Semin, 1996), 휴리스틱적 처리로 인한 판단편향(Guthrie et al., 2002)이 있다. 이 중 휴리스틱적 처리(heuristics)로 인한 판단편향이란 단순하고 간결한 인지처리를 하게 될 때 나타나는 인지적 오류를 의미한다. 이는 한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보고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조합하여 평가하는 체계적 사고와는 대조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가 아닌 보다 직관적이고 단순한 방략인 정신적 지름길에 의존하곤 한다(Tversky & Kahneman, 1974). 예를 들어, 어떤 과자 포장박스에 곡물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그 과자는 알록달록한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과자보다 건강한 식품이라고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이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며 실제로는 곡물 그림이 그려진 과자의 영양성분이 더 좋지 않은 경우도 많다. 몸에 더 이로운 과자를 고르기 위해서는 박스에 표기된 영양성분을 살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포장박스 디자인으로 이를 판단하는 오류를 저지르곤 한다. 이와 같이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비합리적인 판단과정을 휴리스틱이라고 하며, 휴리스틱적 처리로 인해 저지를 수 있는 오류들을 판단편향이라고 한다(Aronson, 2011).

사람은 본질적으로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이다(Fiske & Taylor, 1991). 이 말은 인지적 에너지를 아끼려고 노력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방대한 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모든 결정을 심사숙고하여 내리기에는, 인간의 인지능력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양은 한정되어 있고 주어진 시간 또한 제한적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는 방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정보는 무시하고 어떤 정보는 과용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그러나 비합리적일 수도 있는 결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Aronson, 2011). 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보다 휴리스틱적 처리를 사용하게 만드는 특별한 조건들 또한 존재한다(Pratkanis, 1989). 예를 들어, 이러한 조건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 정보가 과도하게 많아서 모든 정보를 완전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반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또는 문제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경우이다.

휴리스틱 또는 판단편향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나며, 매일 수많은 결정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효율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돕는다(Fiske & Taylor, 1991; Tversky & Kahneman, 1974).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휴리스틱적 처리가 상대적으로 사소하고 일상적인 상황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사재판처럼 개인과 사회에 걸쳐 광범위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법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합리적인 판단과정이 필요한 법정 상황에서도 비합리적인 판단과정은 빈번하게 일어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법정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자주 나타나는 판단편향으로는 확증편향, 사후과잉확신 편향, 틀 효과, 정박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광배, 김상준, 한미영, 2005; Guthrie et al., 2002; Korobkin & Guthrie, 1994).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란 사람들이 자신이 세운 가설을 검증할 때 그

가설을 반증하는 정보는 무시하고 지지하는 정보만 받아들여려고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Klayman & Ha, 1987; Nickerson, 1998). 법정 상황에서 피고인이 유죄 또는 무죄라고 확신하는 경우, 판단자는 재판과정 동안 자신의 확신을 지지하는 증거만 찾으려고 할 것이며 그것을 반증하는 증거나 사례는 무시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판단자가 피고인에 대해 고정관념 혹은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재판에 참여하기 전에 언론에 노출되어 사건에 대한 결론을 이미 내렸다면, 그는 재판과정 동안 그것을 확증하는 증거만을 찾게 될 것이다.

사후과잉확신 편향(hindsight bias)은 어떤 결과가 발생한 후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믿는 경향성을 말한다(Fischhoff, 1982).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결과에 대한 확률판단보다, 실제 그 사건이 일어난 후의 결과에 대한 확률판단이 더 높은 현상이다. 사후과잉확신 편향은 법정 상황에서 사건의 인과관계를 평가할 때 ‘그럴 줄 알았다’며 중요한 정보를 사소하게 평가해 버리게 하거나(안대희, 2010), 2심이나 상고심 판결을 하는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틀 효과(framing effect)는 위험하거나 불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손실과 이익 중 어느 관점으로 제시되느냐에 따라 판단자의 결정이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Kahneman & Tversky, 1984). 민사재판에서 합의를 볼 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때 원고와 피고의 관점은 다르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원고는 이익의 관점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만 피고는 손실의 관점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Guthrie, 2000; Rachlinski, 1996).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검사는 유죄의 틀로, 변호사는 무죄의 틀로 사건에 대해 진술하기 때문에 판단자가 검사나 변호사의 서술에 의존할 경우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김청택, 최인철, 2010). 배심원들은 판사들에 비해 검사나 변호사의 진술에 크게 의지하기 때문에(김병수, 2010), 검사나 변호사가 진술을 통해 틀을 만들어 놓는다면 의사결정 시 그 틀

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박효과(anchoring effect)는 초기에 제시된 수치정보가 기준점의 역할을 하여 이후에 내리는 판단이 그 수치와 유사해지는 현상이다(Champman & Bornstein, 1996; Epley & Gilovich, 2001). 법정 상황에서는 원고 측의 변호인이 제시하는 청구액이나 검사가 제시하는 구형량이 기준점으로 작용하여 최종 배상액이나 양형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사법적 의사결정과 관련한 편향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본 연구는 그 중에서 정박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왜냐하면 정박효과는 법정 상황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편향 중 하나이며(김청택, 최인철, 2010),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현상으로 관찰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적 의사결정 시 정박효과가 나타남을 입증한 연구들은 많았지만, 어떤 요인들과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었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재판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편향들에 더욱 취약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심원들은 법률 지식과 법정 경험이 법관들에 비해 부족하다. 판사들은 일반적으로 지적 수준이 높고 철저하게 교육 받았으며 논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그러한 판사들조차도 주관적 가치로 인한 법 해석과 판단편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Guthrie et al., 2002). 실제로 재판을 지켜보고 직접 판결을 내릴 기회가 거의 없었던 배심원들은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김청택과 최인철(2010)의 연구에서는 판사, 사법연수원생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사재판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손해배상액을 판결하게 하였는데, 판사의 정박효과가 가장 약하고 그 다음이 연수원생이었으며 대학생들에게서 정박효과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들은 판사와 사법연수원생들에 비해 재판 시나리오에 대한 반증질문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재판 상황에 덜 익숙하고 법 관련 지식이 부족한 배심원들이 법정상황에

서 판단편향을 범할 가능성이 직업 법관들보다 더 높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국민참여재판의 긴 공판 시간으로 인한 육신적 피로 때문이다. 절차를 여러 날로 나누어 공판을 진행하는 일반 재판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의 일정을 배려하여 하루 동안 공판의 모든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한다(황병돈, 2010). 국민참여재판은 오전에 배심원 선정을 마친 후 대개 오전 11시에 시작하여 저녁에 종료되며, 간혹 공판이 길어질 경우 심야에 종료되거나 2~3일 동안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2016)의 조사에 의하면 참여재판 공판을 하루만에 마치는 경우에는(90.2%), 오전에 진행되는 배심원 선정 절차를 제외한 공판 소요시간이 평균 9.2시간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민참여재판 후 배심원들이 느끼는 애로사항 중에서 장시간 재판으로 인한 불편이 42.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렇듯 재판이 장시간 진행되면 배심원들은 육체의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집중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피로는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원인이 된다(Cheng & Holyoak, 1985).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재판에 비해 휴리스틱적 처리를 더 촉진시킬 것이다.

셋째, 많은 정보로 인한 인지적 부담 때문이다. 배심원들은 재판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제공하는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더욱이 공판의 내용에는 검사와 변호사의 진술들 뿐 아니라, 사실 확인을 위한 각종 객관적인 자료들, 증거물 및 진술문들이 제시되고, 증인과 피고인 신문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다수의 상충되는 정보들로 인해 배심원들은 인지부하 상태에 놓이기 쉽다. 인지부하가 높은 사람들은 체계적이고 상세한 처리를 하기 보다는 휴리스틱에 영향을 받기 쉽고(Pratkanis, 1989) 처음에 내렸던 결정을 추후에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못하는 편향을 저지른다(Epley & Gilovich, 2006).

넷째, 권위호소 편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권위가 있거나 전문가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을 쉽게 받아들이고 사실이라고 믿는 현상이다. 피고인을 기소한 입장인 검사 측에서는 구체적인 법 조항을 근거로 들어 진술하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배심원들은 판사들에 비해 검사의 주장을 더 쉽게 신뢰하고 의지할 것이다(김병수, 2010). 박희정, 김현정, 최승혁, 허태균(2011)의 연구에 의하면 판단자가 정박점을 제공한 사람의 전문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정박효과가 강하게 일어났다. 더욱이 사람들이 설득당하는 정도는 설득하는 사람의 복장과 차림새에 따라 달라진다(Aronson, 2011; Blass, Alperstein, & Block, 1974). 재판에서 변호사는 사복을 입지만 검사는 규정된 검사복을 입는데, 이로 인해 검사가 더욱더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배심원들은 전문가의 발언, 특히 검사의 서술에 과도하게 의지하게 됨으로써 틀 효과나 정박효과 같은 편향을 더 많이 지지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사법경험과 법적 지식의 부재, 육신적 피로감, 고려해야 하는 정보량의 과다로 인한 인지적 부담, 그리고 전문가 의존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숙고를 거치지 못하고 판단편향의 영향을 받은 평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2. 정서 상태와 판단편향

정보처리는 두 개의 경로 중 하나를 거쳐 이루어진다. 하나는 빠르고, 직관적이며, 자동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과정인 반면에,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느리고, 분석적이며, 의도적이고, 노력을 요구하는 처리과정이다(Epley & Gilovich, 2005). 둘 중 어느 처리과정이 사용되는지 여부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관여하고, 이 요인에는 우리가 느끼는 정서 또한 포함된다. 정서는 학습과 기억, 사회적 판단, 행동을 결정하는 강력한 요인이다(Ambady, 2010). 그 중에서 정서와 정보처리 방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영향을 비교하였다(Ambady & Gray, 2002; Forgas, 1998; Forgas & Bower, 1987; Park & Banaji, 2000).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들은 휴리스틱을 더 많이 사용하고 인지적 지름길에 의존하며 상세한 정보를 처리하는 작업에는 약한 경향이 있고, 반대로 우울하거나 슬픈 사람들은 체계적이고 세밀한 정보처리 과정을 사용하며 신속한 처리에는 약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긍정적 정서를 느끼는 사람들은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사람들에 비해 의사결정 시 편향적인 판단을 더 많이 내리게 된다. Park과 Banaji(2000)는 참가자들에게 백인이름과 흑인이름 목록을 범죄자, 정치가, 농구선수 등의 범주로 분류하게 했는데, 긍정적 정서를 느낀 사람들이 부정적 정서를 느낀 사람들에 비해 더 인종 고정관념적인 범주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서는 특질(trait)정서와 상태(state)정서로 구분된다. 특질정서는 개인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적이고 안정적인 정서적 특성으로서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상태정서는 특정한 사건에 의해 일시적으로 변동되는 기분의 상태를 의미한다(Polk, Cohen, Doyle, Skoner, & Kirschbaum, 2005). 범죄와 관련된 재판 공방을 지켜볼 때에는 개개인의 특질정서를 넘어서는 특정한 상태정서가 유발된다. 범죄사건 재판이 끝난 후 배심원들을 인터뷰한 연구에서는 배

심원들이 재판에서 다루지는 정보들에 의해 기분과 감정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다(Hafemeister, 1993). 범죄재판은 폭력적이고, 잔혹하고, 때로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다루며 배심원들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하거나 우울하게 만드는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배심원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무시할 수 없고 오히려 주의 깊게 듣고 생각해야 하므로(Semmler & Brewer, 2002), 재판 과정 동안 분노 또는 슬픔의 정서를 느끼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분노와 슬픔은 둘 다 부정적인 정서이지만 각각 다른 인지처리경로를 사용하게 만든다. 분노는 부정적 정서보다는 오히려 긍정적 정서와 유사한 인지처리 경로를 활성화시킨다. 분노를 느끼는 사람은 휴리스틱적 처리가 촉진되어 정보를 심사숙고하기보다는 간편하게 처리하고, 고정관념적 판단을 하기 쉬우며 성급하고 충동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Bodenhausen, Sheppard, & Krammer, 1994; Tiedens, 2001). 반면에 슬픔을 느끼는 사람은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더 오래 걸리고, 주의 깊게 생각하며, 자세하고 정교한 분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Cooley & Nowicki, 1989; Forgas, 1998). 박희정(2015)은 슬픔을 느끼는 사람과 분노를 느끼는 사람의 판단 정확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슬픔 또는 분노정서가 유도된 참가자들은 진실영상과 거짓영상을 시청하고 각 영상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에 비해 거짓말을 잘 판단하지 못하였다. 또한 Semmler와 Brewer(2002)는 정서가 사법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자들은 슬픔정서 조건과 중립정서 조건의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교통사건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지만, 슬픔정서 조건의 시나리오에는 사고를 낸 운전자와 피해자들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정보를 포함시켜 슬픔정서를 유도하였다. 연구 결과, 슬픈 기분을 느낀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에 비해 재판정보를 더 주의 깊게 처리하여 증인진술에서 불일치하는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보고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분노 정서는 따로 조작되지는 않았으나, 시나리오를 통

해 분노를 느꼈다고 응답한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에 비해 증인의 진실성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해당 분야의 비전문가는 전문가에 비해 상태정서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Srull(1987)의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을 긍정적 정서, 중립적 정서,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도록 조작한 후, 제품광고를 보고 제품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하였다. 연구결과, 기존에 해당 제품군에 대한 지식이 없던 비전문가 집단이 해당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집단에 비해 상태정서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전문가집단은 긍정적 정서가 유발되었을 때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었을 때보다 제품에 대한 평가점수가 훨씬 높았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재판에 거의 처음 참여하고 법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배심원들은 재판경험이 많고 훈련이 되어있는 판사들에 비하여 정서의 영향을 받기가 더 쉽다(박형관, 2012; Weninger, 1994). 따라서 법정 공방을 지켜보면서 특정한 정서가 유발되면 배심원들은 냉정하고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배심원들은 사실관계보다는 검사, 변호인, 피고인, 증인의 발언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객관적 증거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쉽다(김병수, 2010; 조인현, 2013). 따라서 검사 혹은 변호사가 감정에 호소한다면 배심원들은 이에 치우치는 판단을 내릴 소지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진술 시 배심원들의 분노를 유도하여 원하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며, 변호인 측에서는 슬픔을 유발시키는 진술을 통해 검사구형량과는 최대한 먼, 즉 낮은 형량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배심원들이 사실관계와 양형기준과 상관없이 감정적으로 양형을 판단한다면, 결과적으로 피고인 혹은 피해자 어느 한 쪽에게 억울하고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느끼는 정서가 사법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정 상황에서

느끼는 상태정서에 따라 정박으로 작용하는 검사구형량의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증하였다.

3. 사법적 의사결정과 정박효과

정박효과(anchoring effect)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어떤 숫자정보를 접한다면 그 숫자가 기준점 또는 정박점(anchor)이 되어 그 근처의 값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배가 한 지점에 닻을 내리고 정박했을 때 일정 거리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고 또한 어떤 수치 근처에 머물러 멀리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Tversky와 Kahneman(1974)은 실험을 통해 정박효과를 최초로 증명하였다. 이들은 참가자에게 수치를 추정하는 문제들을 내고 임의로 정해진 정박점을 제시한 뒤, 그 값에서 위로 또는 아래로 움직이며 최종 값을 추정하게 하였다. 그 중 한 문제는 UN에 가입된 국가 중 아프리카 국가의 비율을 추정하는 문제였는데, 낮은 정박점은 10, 높은 정박점은 65가 제시되었다. 그 결과, 최초의 정박점에 따라 참가자들이 판단한 추정치가 다른 것이 관찰되었다. 즉 낮은 정박점이 제시되었을 때의 참가자 추정치(25)보다 높은 정박점이 제시되었을 때의 참가자 추정치(45)가 더 높게 나타났다.

법정 상황에서 정박효과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두 경우 모두에서 나타난다. 민사재판에서는 원고 측이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액이 정박점으로 작용하여 편향된 손해배상판결을 내리게 할 수 있다. Guthrie 등(2002)은 판사들에게 민사재판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게 했는데, 원고 측 변호사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이 높아질수록 판사들이 선고하는 최종배상액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구액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손해배상액 또는 위자료가 달라지는 결과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Champman, Bornstein, 1996; Robbennolt & Studebaker, 1999) 배심원 자격이 있는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Hastie, Schkade, & Payne, 1999).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정박효과가 검찰 측 구형의견에 따라 최종 선고형이 달라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Englich와 Mussweiler(2001)는 직업법관들과 법대생들에게 강간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시나리오를 읽게 하고 형량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시나리오의 마지막에는 검사구형량이 제시되었다. 연구 참가자들이 내린 최종 선고형량을 비교한 결과, 직업법관과 법대생 모두 검사구형량이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 더 높은 양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종 양형판결이 검사구형량에 정박되는 현상은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김청택, 최인철, 2010; 박광배 등, 2005).

1) 정박효과를 강화시키는 요인

정박효과가 사법적 의사결정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임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입증되었다. 하지만 정박효과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도 모든 상황에서 항상 동일한 정도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정박효과가 사건의 유형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합리적 사고보다 휴리스틱적 처리가 잘 사용되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Cheng & Holyoak, 1985; Pratkanis, 1989) 법정 상황에서도 휴리스틱이 더 잘 발현되는 조건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다시 말해, 정박효과는 재판에서 다루는 범죄의 내용, 제공되는 정보의 유형과 양, 재판시간, 판단자의 정서상태, 정박점 제공자의 신뢰성 등에 따라 더 강하거나 약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판시간이 길어질수록, 재판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어렵거나 많을수록, 신체적·인지적 부담이 늘어나 휴리스틱적 처리가 촉진되고 정박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범죄사건이 비교적 가벼운 사건일 때에 비하여 중대하고 파급력이 큰 사건일수록 판단자의 책임감과 부담감은 높아질 것이다. 살인이나 살인미수, 성

폭력 등의 중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죄질이 무거우므로 형량기준도 높고, 살인의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과 사형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중범죄재판의 결과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타인의 인생이 나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책임감, 그러므로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따지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감은 경범죄사건보다 중범죄사건에서 더 클 것이다. 사람들은 인지적 부담이 클수록 휴리스틱적 처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범죄사건에 대해 양형판단을 내려야 할 때, 법 전문가인 검사의 구형의견은 나의 판단의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참고할만한 기준점으로 생각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중범죄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경범죄사건에서보다 더 정박점에 가까운 판단을 내림으로써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려고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정박점 즉 검사구형량의 크기에 따라 정박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법적 의사결정과 정박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하나의 사건 시나리오에 대해 낮은 검사구형량과 높은 검사구형량을 제시하고 각 검사구형량에 따른 참가자들의 양형 판단값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정박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검사구형량의 크기에 따라 정박효과의 정도가 달라지는지, 즉 제시된 검사구형량과 최종 양형값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는지는 검증하지 않았다. 실제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적절한 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검찰 측에서 구형량이 높게 제시됨에 따라 그 영향으로 최종 결정되는 양형도 높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안대희, 2010).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모든 사건에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에 검사가 제시하는 구형량이 해당 사건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거나 낮다면 적절하게 느껴질 때에 비해 정박효과가 약해질 것이다. Simmons, LeBoeuf, 그리고 Nelson(2010)에 의하면 정박점이 그럴듯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조정방향에 대해 확신하게 되는 경우 정박효과가 약해진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주어진 정박



그림 1. 연구설계 모형

점이 터무니없이 높거나 낮아서 위 또는 아래 중 어느 방향으로 조정해야 하는지 확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박점과 최종 판단값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죄사건의 경중에 따른 정박효과의 차이 뿐 아니라, 정박점(검사구형량)의 크기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증하였다. 이에 하나의 범죄사건에 대해 적절한 검사구형량을 제시하는 조건과 부적절한 검사구형량을 제시하는 조건을 나누었다.(그림 1) 구체적으로, 중범죄사건은 해당 사건에 비해 너무 낮다고 생각되는 구형을 제시하는 조건(저정박 조건)과 비교적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구형을 제시하는 조건(고정박 조건)을 나누었다. 그리고 저정박 조건에서 고정박 조건보다 검사구형량과 최종 판단값의 거리가 멀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죄질이 무거운 중범죄사건에 대해 너무 낮은 구형이 제시된다면 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여 더 높은 최종 양형을 결정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정박효과가 약해질 것이다. 반대로, 경범죄사건에서는 해당 사건에 비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구형을 제시하는 조건(고정박 조건)과 비교적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구형을 제시하는 조건(저정박 조건)을 나누었다. 그리고 고정박이 제시될 때 저정박이 제시될 때보다 검사구형량과 최종 판단값

의 거리가 멀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너무 높은 형량이 제시된다면 처벌이 과도하다는 생각을 하거나 반발심이 들어 더 낮은 최종 양형을 선택할 것이고 따라서 정박효과가 약해질 것이다.

2) 정박효과를 약화시키는 방안

사법적 의사결정 시 정박효과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이로 인한 오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조인현, 2013). 사람들은 정박점이 적절하지 않은 정보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지 못한다. English, Musweiler와 Strack(2006)의 연구에서는 법관들이 검사구형량이 실험을 위해 무작위로 선택된 수치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구형량 근처의 값으로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 결과는 검사구형량이 주사위를 던져 결정된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동기 관련 연구들에서는 답을 맞히면 금전적 보상을 준다고 하여 정확한 답을 산출하고자 하는 동기를 증가시켰으나 정박효과는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hampman & Johnson, 2002; Tversky & Kahneman, 1974; Wright & Anderson, 1989).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정박점을 제공하지 않고 참가자들이 스스로 정박을 생성시킨 경우에는, 외부보상이나 주의를 통해 정박과 판단값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발견되었다(Epley & Gilovich, 2005).

정박효과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에는 두 가지 모델이 존재한다. 하나는 정박-조정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접근가능성 모델이다. 정박-조정 모델에서는 어떤 값에 대한 추정치를 생각해야 할 때, 처음에 주어진 값에 정박(anchoring)한 후 그 값에서 조정(adjustment)하는 방식으로 답을 낸다고 본다(Epley & Gilovich, 2006; Epley, Keysar, Van Boven, & Gilovich, 2004; Mussweiler

& Strack, 2001). 사람들은 자신이 만족하고 확신할 때까지 초기값으로부터 조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정확성 동기가 없는 경우 이 조정과정이 불충분하여 최종 결정이 정박점 근처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접근가능성 모델에서는, 사람들이 ‘실제값과 정박점이 유사할 것인가’ 하는 가설에서 추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정박점이라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즉 정박점 수치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옳고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되며, 정박점과 관련된 정보가 더 쉽게 활성화되고 기억에 남기 때문에 정박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이다(Champman & Johnson, 2002; Strack & Mussweiler, 1997). 접근가능성 모델에 의하면 조정은 본래 일어나지 않는 과정이고 정확성 동기가 있어도 정박효과를 약화시키지 못한다.

보상 등으로 정확성 동기를 증가시켜 정박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에 실패한 연구들은 선택적 접근성 모델을 활성화시키는 문제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는 5,000km보다 높습니까 또는 낮습니까?(선택형질문)”라는 질문으로 정박점을 제공한 후에 “그렇다면 에베레스트 산의 실제 높이는 몇 km입니까?(개방형질문)”라는 질문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 프레임에서는 접근가능성 모델이 활성화되어 정박점이 유용한 정보로 인식되고 실제 값이 정박점 근처일 것이라고 생각되어 조정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Champman & Johnson, 2002; Simmons et al., 2010). 반면에 정박-조정 모델이 활성화될 때에는 판단자에게 정확성 동기가 있다면 조정을 충분히 많이 하게 된다. 조정과정은 의식적이고 노력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보상이나 주의를 주어서 정확하게 답을 산출하고자 하는 동기를 증가시키면, 조정을 많이 하게 되어 정박점-판단값 거리가 멀어진다(Epley & Gilovich, 2006). 이러한 정박-조정 모델은 정박이 외부에서 주어질 때보다 판단자가 스스로 정박을 설정했을 때 활성화된다(Epley & Gilovich, 2005; Simmons et al., 2010).

검사구형량은 외부에서 제공되는 정박, 특히 권위 있는 전문가로 여겨지는

검사가 제시하는 정박이기 때문에 접근가능성 모델을 활성화시켜 견고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정확성 동기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정박효과를 약화시키려면 정박으로부터 조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조정과정은 스스로 정박점을 만들었을 때 더 잘 일어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검사구형을 듣기 전에 판단자가 먼저 걱정 양형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게 한 후 검사구형량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에 정박효과에 대한 주의를 주어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동기를 증가시켰다. 이 경우에는 충분히 조정하고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쳐 정박효과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였다. 한편 정확성 동기와 정박효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들은 일반상식 문제를 사용했지만 (Champman & Johnson, 2002; Simons et al., 2010; Tversky & Kahneman, 1974),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에서는 주의를 주는 것만으로도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판단자가 걱정 형량에 대해 생각해보는 절차 없이 주의문만 제공하는 조건도 추가하여 비교하였다.

Ⅲ. 연구 문제 및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형사재판의 사법적 의사결정에서 양형을 판단할 때 정박효과가 나타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범죄사건의 경중과 정박점의 크기, 그리고 재판 상황에서 유발되는 정서상태가 정박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정박효과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검사구형을 듣기 전 스스로 걱정 양형을 생각해보고 정박효과에 대한 주의를 듣는 것이 정박효과를 약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 1. 범죄사건의 경중과 정박의 크기에 따라 양형판단 시 나타나는 정박효과의 차이가 있을 것인가?

가설 1-1. 중범죄사건에서 경범죄사건보다 정박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2. 경범죄사건에서는 저정박이 제시될 때 고정박이 제시될 때보다 정박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3. 중범죄사건에서는 고정박이 제시될 때 저정박이 제시될 때보다 정박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 문제 2. 정서상태에 따라 양형판단 시 나타나는 정박효과의 차이가 있을 것인가?

가설 2-1. 분노정서를 느낄 때 슬픔정서를 느낄 때보다 정박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 문제 3. 검사구형량이 제시되기 전에 스스로 걱정 양형을 생각하고 정박

효과에 대한 주의를 듣는 경우 정박효과는 감소할 것인가?

가설 3-1. 검사구형량이 제시되기 전에 스스로 걱정 양형을 생각하고 정박 효과에 대한 주의를 받는 경우 정박효과는 감소할 것이다.

가설 3-2. 검사구형량이 제시되기 전에 스스로 걱정 양형을 생각해보지 않고 정박효과에 대한 주의만 받는 경우 정박효과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IV. 연구방법 및 결과

1. 연구 1

1) 연구 참가자

연구 1은 서울 소재 4년제 여자대학교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표본을 대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⁴⁾에 따라 대학생들이 충분히 배심원으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조사 결과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하여 겪는 정신적 충격은 연령 별로 차이가 없었으며, 배심원들의 학력 비율은 ‘대학 재학 및 졸업’이 41.8%로 가장 높았다(법원행정처, 2014). 이에 대학생 표본이 배심원 수행에 있어 다른 연령집단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잠재적인 배심원집단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여학생들만을 참가자로 포함시킨 이유는 재판에 대한 이해 정도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었다(최수형, 2011).

연구 참가자는 74명이었으며, 한 참가자가 두 개의 시나리오를 보게 되었으므로 총 자료의 개수는 148개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6개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모든 참가자들의 연령은 참여법률의 배심원 선정기준에 의하여 만 20세 이상이었고, 평균 연령은 21.53세였다($SD=1.38$).

2) 실험도구

4) 법률 제 13762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약칭: 국민참여재판법) 제 16조(배심원의 자격)에 따르면,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되며, 전과가 있거나 변호사, 경찰관 같은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두 개의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시나리오를 제작하기 위해 실제 범죄사건을 참고하였고, 범죄전문가에게 감수 받은 후 최종 시나리오를 완성하였다(부록 1 참조). 경범죄 시나리오는 절도사건으로 구성되었고, 중범죄 시나리오는 살인사건으로 구성되었다. 절도사건의 저정박은 징역 2년, 고정박은 징역 7년이었으며⁵⁾, 살인사건의 저정박은 징역 6년, 고정박은 징역 18년이였다⁶⁾. 두 시나리오에서 피고인의 성별, 나이 및 직업은 동일하였다.

선행연구들이 연구를 위해 재판 시나리오를 사용할 때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한 글을 제시한 것과 달리(김청택, 최인철, 2010; 박광배 등, 2005; 박희정, 김현정, 최승혁, 허태균, 2011; Guthrie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실제 재판처럼 검사와 변호사가 공방을 벌이는 형식으로 시나리오를 제작하였다. 시나리오의 마지막 부분에는 검사, 변호사, 피고인의 최종진술이 제시되었으며, 검사 최종진술에는 검사구형량이 포함되어 이것이 정박으로 작용하도록 했다.

(2) 의사결정

각 시나리오마다 두 개의 질문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 질문은 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는 것이었다(“위 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매우 낮다; 7-매우 높다). 이 질문은 검사구형량(정박점)이 해당 범죄사건에 대한 인지에 영향을 미쳐서 최종 양형

5)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절도사건의 적정양형은 1~3년이다.

6)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살인사건은 기본양형 10~16년에, 시나리오에 포함된 계획적 살인,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의 가중요소가 인정되어 16년 이상의 구형이 적절하다.

판단을 달라지게 하는지, 아니면 범죄사건에 대한 인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최종 양형판단만 달라지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즉 검사구형량에 따라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와 최종 양형이 모두 달라지는 경우에는, 검사구형량이 높게 제시될수록 해당 범죄사건의 피해를 심각하게 여겼기 때문에 더 높은 최종 양형을 결정했음을 의미할 것이다. 만약 검사구형량에 따라 심각성 점수는 변하지 않고 최종 양형만 변한 경우에는,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와 상관없이 단순히 최종 의사결정만 검사구형량의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질문은 주관식으로 양형을 판단하도록 하는 질문이었으며 “0년 또는 0년 0개월”로 응답하도록 하였다(“피고인에게 몇 년의 징역형을 내리시겠습니까?”).

(3) 인구통계학적 정보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나이, 전공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절차

참가자들은 본 연구가 시민들이 범죄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알아보는 조사라고 소개받은 뒤 시나리오를 받았다. 한 명의 참가자는 절도 시나리오와 살인 시나리오를 모두 읽게 되었다. 이 때 절도 시나리오의 정박조건 중 하나, 살인 시나리오의 정박조건 중 하나를 무작위로 할당하였다. 따라서 범죄의 경중은 피험자 내 설계, 정박조건은 피험자 간 설계로서 총 실험조건은 네 개였다. 이러한 설계를 한 이유는 처음에 제시된 시나리오의 검사구형량 크기에 따라 다음에 제시된 시나리오의 검사구형량이

상대적으로 생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절도 및 살인 시나리오가 제시되는 순서는 순서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상쇄평형화 기법을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은 시나리오를 읽고 범죄의 심각성과 양형판단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뒤, 다음 시나리오를 읽고 같은 질문에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정보인 성별, 나이, 전공을 묻는 질문에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에는 약 1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참가자들은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참여에 대한 사례로 1,500원 상당의 보상을 받았다.

4) 결과

각 시나리오에 대해 참가자들이 평가한 심각성 점수와 최종 양형을 각 조건별로 비교하였다(표 1). 최종 양형은 참가자들이 내린 양형(예: 0년 또는 0년 0개월)을 개월 수로 변환하였다.

표 1. 정박조건에 따른 심각성 점수와 양형의 평균과 표준편차 (N=74)

	경범죄(절도)		중범죄(살인)	
	저정박(24월)	고정박(84월)	저정박(72월)	고정박(216월)
사례수	36	37	32	37
심각성	4.83 (0.71)	4.82 (1.04)	6.13 (0.81)	6.56 (0.61)
양형	35.36 (24.17)	64.11 (17.51)	105.44 (50.48)	233.03 (203.44)

주. 양형의 단위: 개월 수

경범죄사건에서 고정박이 제시되었을 때($M=64.11$, $SD=17.51$) 저정박이 제시되었을 때보다($M=35.36$, $SD=24.17$) 최종 양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71)=5.83$, $p<.001$). 마찬가지로 중범죄사건에서도 고정박이 제시되었을 때

($M=233.03$, $SD=203.44$) 저정박이 제시되었을 때보다($M=105.44$, $SD=50.48$) 최종 양형이 더 높았다($t(67)=3.35$, $p=.001$). 다시 말해서, 경범죄와 중범죄사건에서 모두 정박점인 검사구형량이 높을수록 최종 양형이 높아졌는데, 이는 사건의 경중과 상관없이 검사구형량에 의한 정박효과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한편 심각성 점수를 살펴본 결과, 경범죄사건에서는 정박에 따른 심각성점수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t(56)=0.05$, $p=.96$), 중범죄사건에서는 심각성점수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63)=2.43$, $p<.05$). 구체적으로 중범죄사건에서는 고정박 조건에서($M=6.56$, $SD=0.61$) 저정박 조건보다($M=6.13$, $SD=0.81$)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된 연구문제인 정박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양형과 정박점 사이의 거리값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표 2). 거리값을 구할 때는 Epley와 Gilovich(2001)의 방법을 사용하여, 최종 양형에서 정박점을 뺀 절대값을 표준편차로 나누어 표준점수를 구하였다. 이 거리값이 작을수록 최종 양형과 정박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므로 정박효과가 강한 것이고, 거리값이 클수록 최종 양형과 정박점 사이의 거리가 먼 것이므로 정박효과가 약함을 의미한다.

경범죄사건과 중범죄사건의 거리값을 비교한 결과, 중범죄사건의 거리값이($M=0.60$, $SD=0.91$) 경범죄사건의 거리값보다($M=0.98$, $SD=0.88$)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t(140)=2.51$, $p<.05$). 이는 가설 1-1에서 예상한대로 중범죄사건에서

표 2. 양형과 정박점 간 거리 (N=74)

	경범죄(절도)		중범죄(살인)	
	저정박	고정박	저정박	고정박
거리값	0.67 (0.87)	1.28 (0.80)	0.78 (0.91)	0.45 (0.90)
합계	0.98 (0.88)		0.60 (0.91)	

경범죄사건보다 정박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 결과이다. 이후 각 사건의 정박 조건 별로 정박효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사건의 경중과 정박조건이 거리값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138)=6.08, p<.01$, 그림 2 참조). 구체적으로 경범죄사건의 고정박조건에서 나머지 세 조건들에 비해 정박효과가 약하게 나타났다. 나머지 세 조건의 정박효과는 경범죄사건의 고정박조건보다 강했으며, 세 조건 간에는 동일한 정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사건 별로 정박조건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경범죄사건의 경우에는 정박점에 따라 거리값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1)=9.81, p<.01$). 즉 경범죄사건의 저정박 조건에서($M=0.67, SD=0.87$) 고정박 조건보다($M=1.28, SD=0.80$) 정박효과가 더 강하였다. 이는 가설 1-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중범죄사건의 경우에는 저정박 조건과 고정박 조건 간 거리값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3은 지지되지 않았다($F(1)=2.24, p=.14, \eta^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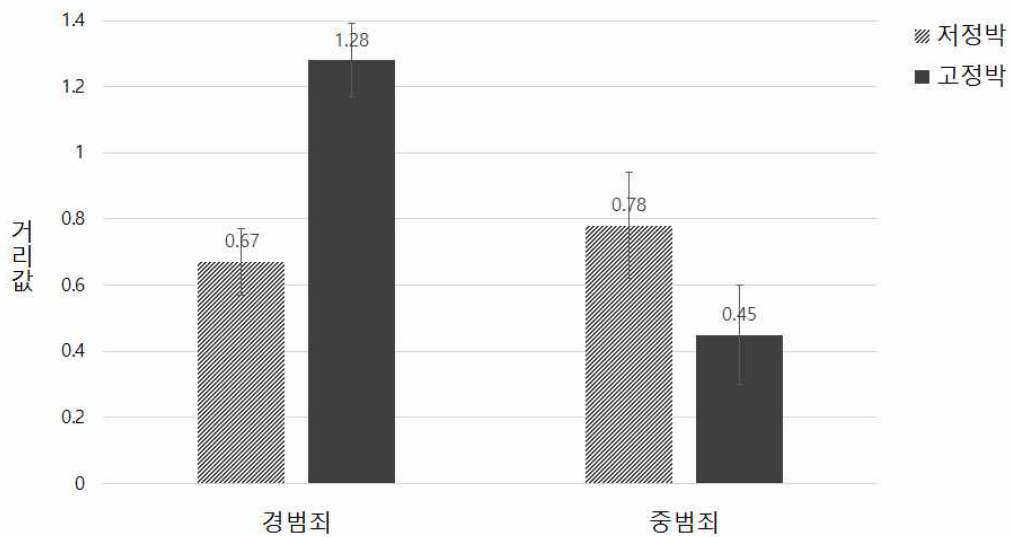


그림 2. 경범죄 시나리오와 중범죄 시나리오에서 정박크기에 따른 정박효과의 차이

사건의 경중 및 정박조건에 따른 심각성점수와 거리값의 차이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경범죄사건에서는 정박점(검사구형량)이 심각성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경범죄사건의 고정박 조건에서는, 저정박 조건과 비교했을 때 심각성점수는 차이가 없었으나 정박효과는 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범죄사건에서 적정 형량보다 높은 검사구형량이 제시되어도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는 높아지지 않았고, 이에 최종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검사구형량의 영향을 받지 않은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중범죄사건에서는 고정박 조건에서 저정박 조건에 비해 심각성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정박효과는 고정박과 저정박 조건에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중범죄사건에서는 검사구형량의 크기에 따라 사건에 대한 인지 또한 영향을 받았고, 따라서 검사구형량이 낮은 높은 이것이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 연구 2

1) 연구 참가자

연구 2에는 경기도와 인천 소재 4년제 대학교의 만 20세 이상 학부생 93명이 온라인으로 참가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7명과 정서상태가 조작되지 않은 22명을 제외한 7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들의 성별은 남자 31명(43.7%), 여자 40명(56.3%)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만 22.48세였다 ($SD=2.29$). 슬픔조건과 분노조건에의 참가자 수는 각각 37명, 34명이었다.

2) 실험도구

(1) 정서조작 동영상

참가자들의 정서를 슬픔 또는 분노상태로 조작하기 위해 동영상 자극을 사용하였다. 이에 각각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다큐멘터리, 뉴스 동영상을 선정하여 이를 약 3분 길이로 편집하였다.

(2) 감정형용사 목록

정서조작 동영상을 시청한 후 해당 정서가 유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감정형용사 목록을 사용하였다. 이 목록은 장효진(2001)의 감정형용사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슬픔을 나타내는 형용사 3개(“슬픈, 애잔한, 눈물겨운”), 분노를 나타내는 형용사 3개(“분노의, 화가 난, 분개한”), 그 외의 형용사 4개(“기쁜, 열

정적인, 활기찬, 흐뭇한”)로 구성하였다. 참가자들은 각각의 형용사 감정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다음의 감정 상태를 현재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까?”; 1-전혀 느끼지 않음; 5-매우 강하게 느낌).

(3) 재판 애니메이션

연구 2 역시 연구 1과 마찬가지로 검사와 변호사의 공방으로 이루어진 재판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서면 시나리오를 사용한 연구 1과 달리, 연구 2에서는 실제감과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된 동영상을 사용하였다. 애니메이션 동영상의 내용은 연구자가 실제 사건을 토대로 제작한 살인사건 재판이었으며(부록 2 참조) 분량은 약 3분이었다. 또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의 성별을 하나의 성별(남성)로 통일하였으며, 목소리 톤과 속도를 최대한 유사하게 녹음하고 편집하였다. 검사구형량은 시나리오 사건의 적정형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20년이 제시되었다.

(4) 의사결정

의사결정 질문은 연구 1과 마찬가지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는 질문과 양형을 결정하는 주관식 질문 두 개였다.

(5) 인구통계학적 정보

연구 1의 문항과 동일하였다.

3) 절차

참가자들은 본 연구가 시민들이 범죄사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사결정에 대한 조사라고 소개받았다. 이들은 먼저 할당된 조건에 따라 슬픔 또는 분노를 유도하는 동영상 시청 후, 해당 정서가 유발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해 감정형용사 목록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이후 재판 애니메이션을 시청한 뒤, 범죄의 심각성과 양형판단을 묻는 질문에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묻는 질문에 응답하였고, 정서조작 동영상으로 유도된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2분 분량의 예능동영상을 시청하였다. 모든 절차에는 약 1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로 1,200원 상당의 쿠폰을 받았다.

4) 결과

먼저 정서조작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정형용사 목록에 대한 응답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각 조건에서 유도하고자 하는 정서뿐 아니라(예: 슬픔) 유도되지 않아야 하는 정서도 함께 높거나(예: 분노), 또는 유도하고자 하는 정서의 점수가 매우 낮은 사례들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유도정서 점수와 유도되지 않아야 하는 정서 점수의 차이가 0.5점 이하로 구분이 되지 않거나, 유도정서의 점수가 5점 만점 중 3점 미만으로 매우 낮은 사례들을 제외하고(슬픔 조건=6명; 분노조건=16명)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나리오에 대해 참가자들이 평가한 심각성점수, 최종 양형, 거리값을 구하여 조건별로 비교하였다(표 3). 거리값은 연구 1과 마찬가지로, 각 참가자들이 결정한 양형(월)에서 정박점(20년=240월)을 뺀 절대값을 표준편차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먼저 심각성점수를 살펴본 결과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는 슬픔조

표 3. 정서조건에 따른 심각성, 양형, 거리값의 평균과 표준편차 (N=71)

		사례수	심각성	양형	거리값
정서상태	슬픔	37	6.03 (1.04)	167.73 (71.01)	1.20 (0.76)
	분노	34	6.21 (0.88)	245.71 (137.71)	0.72 (0.69)

주1. 양형의 단위: 개월 수

주2. 거리값이 작을수록 정박효과가 강한 것을 의미함

건과 분노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69)=0.78, p=.44$). 그러나 최종 양형의 개월 수는 분노조건이 슬픔조건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8.45)=-2.96, p<.01$). 분노조건의 최종 양형은($M=245.71, SD=137.71$) 시나리오의 정박점인 240월과 근접한 반면, 슬픔조건의 최종 양형은($M=167.73, SD=71.01$) 정박점인 240월보다 낮았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거리값은 슬픔조건과 분노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69)=2.80, p<.01$). 구체적으로 분노조건에서($M=0.71, SD=0.69$) 슬픔조건에 비해($M=1.20, SD=0.76$) 거리값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이는 분노정서를 느낄 때 슬픔정서를 느낄 때보다 정박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가설 2-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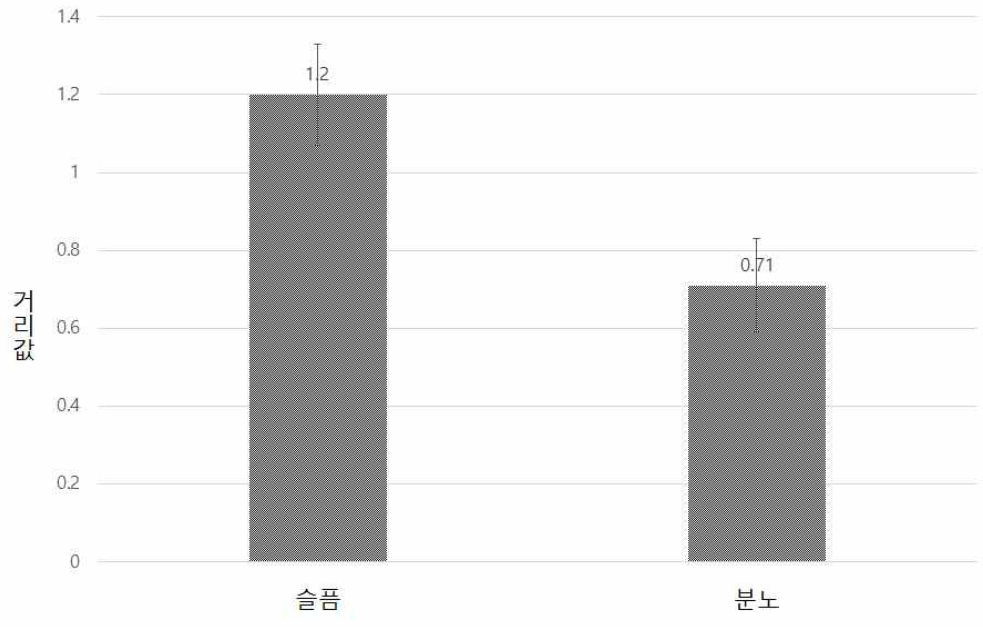


그림 3. 슬픔조건과 분노조건에서 정박효과의 차이

3. 연구 3

1) 연구 참가자

실험 3은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교의 만 20세 이상 학부생 108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9명을 제외한 99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들의 성별은 남자 41명(41.4%), 여자 58명(58.6%)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만 21.99세였다($SD=3.37$). 조정주의 조건, 주의 조건, 무주의 조건에는 각각 31명, 32명, 36명이 무선할당 되었다.

2) 실험도구

(1) 재판 동영상

연구 3에서는 연구 2에서 사용한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사용하였다(부록 2 참조). 재판의 내용은 살인사건이었으며 검사구형량은 20년이 제시되었다.

(2) 주의문

객관적이고 정확한 양형을 결정하고자 하는 동기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정박효과에 대한 주의문을 제시하였다. 조정주의 조건과 주의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다음의 주의문을 최종 양형을 결정하기 전에 읽도록 하였다.

“인간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기준점이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그 근처의 값으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사가 제시한 구형량은 기준 또는 최종 양형선고가 아니며 검찰 측의 의견일 뿐입니

다. 이것은 적절한 형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방금 보신 범죄사건은 피고인, 피해자, 유족들의 인생이 달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심사숙고하시어 최대한 올바르게 객관적인,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무주의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주의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3) 의사결정

의사결정 질문은 연구 1 및 연구 2와 마찬가지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는 질문과 양형을 판단하는 주관식 질문 두 개였다.

(4) 인구통계학적 정보

연구 1 및 연구 2의 문항과 동일하였다.

3) 절차

참가자들은 본 연구가 시민들이 범죄사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사결정에 대한 조사라는 소개를 받고 세 개의 조건(조정주의, 주의, 무주의) 중 하나에 무선할당 되었다. 이들은 재판 애니메이션을 보고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을 내려달라는 설명을 들었다. 조정주의 조건의 경우, 참가자가 동영상을 시청하다가 검사구형량이 제시되는 검찰 측 최종진술이 나오기 전에 동영상이 중단되었다. 이 때 참가자는 범죄자에게 내릴 적정 양형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고, 적정 양형을 적은 뒤 검사구형량이 제시되는 재판의 후반부 부분을 마저 시청하였다. 이후 사건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하였으며, 주의문을 읽고 최종 양형판단 질문에 답하였다. 주의 조건의 참가자는 중간에 적정 양형에

대해 생각해보는 절차 없이 동영상 한 번에 모두 시청한 후, 주의문을 읽고 양형을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무주의 조건의 참가자는 동영상을 한 번에 시청한 후 주의문 없이 양형을 결정하였다. 모든 절차에는 약 1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로 1,000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

4) 결과

시나리오에 대해 참가자들이 평가한 심각성점수, 최종 양형, 거리값을 구하여 각 조건별로 비교하였다(표 4). 세 집단 간 심각성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F(2, 94)=1.54, p=.22$), 최종 양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F(2, 96)=4.01, p<.05$). 구체적으로 조정주의 집단의 최종 양형이($M=144.10, SD=55.76$) 주의 집단과($M=196.31, SD=95.52$) 무주의 집단의($M=180.67, SD=68.80$) 최종 양형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정박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거리값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각 집단 간 거리값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2, 96)=9.21, p<.001$, 표 5). 이 차이가 어느 집단 간에 유의미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인

표 4. 각 조건에 따른 심각성, 양형, 거리값의 평균과 표준편차 (N=99)

	사례수	심각성	최종 양형	거리값
조정주의	31	5.77 (0.81)	144.10 (55.76)	1.72 (1.00)
주의	32	5.68 (0.95)	196.31 (95.52)	0.88 (0.64)
무주의	36	6.03 (0.79)	180.67 (68.80)	1.06 (0.79)

주1. 양형의 단위: 개월수

주2. 거리값이 작을수록 정박효과가 강한 것을 의미함

표 5 . 각 조건에 따른 거리값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i>F</i>	<i>p</i>
조건	12.36	2	6.18	9.21	<.001
오차	64.45	96	0.67		
합계	76.81	98			

Scheffe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정주의 집단($M=1.72$, $SD=1.00$) 주의 집단($M=0.88$, $SD=0.64$) 무주의 집단($M=1.06$, $SD=0.79$)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정주의 집단에서 주의 집단과 무주의 집단에 비해 정박효과가 약하게 나타난 것으로, 조정주의 집단에서 양형을 판단할 때 검사구형량의 영향을 덜 받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주의 집단과 무주의 집단 간 거리값은 차이가 없었다. 이는 가설 3-1과 3-2를 모두 지지하는 결과이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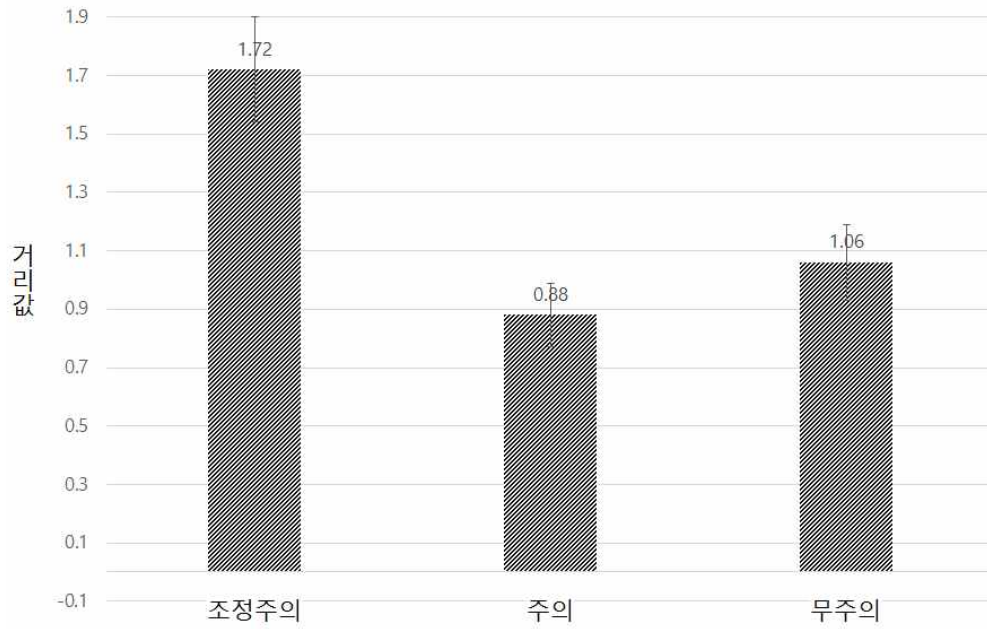


그림 4. 조정주의, 주의, 무주의 조건의 정박효과의 차이

V. 논 의

1. 결과해석 및 의의

본 연구는 배심원 선정자격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사재판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검사구형량의 영향을 받는 정박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법적 의사결정 상황에서 정박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된 바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더욱 구체화하여 정박효과가 모든 상황에서 동일한 정도로 나타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보편적이고 강력한 현상이라고 알려진 정박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 1과 연구 2를 통하여 어떠한 상황에서 정박효과가 더 강하게 또는 더 약하게 일어나는지 밝히고, 연구 3에서 정박효과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탐색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연구 1에서는 사건의 경중과 정박크기에 따른 정박효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경범죄사건(절도)과 중범죄사건(살인) 모두에서 정박점(검사구형량)에 따라 최종 양형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경범죄와 중범죄사건 모두에서 검사구형량에 의한 정박효과가 발생한 것으로서, 정박효과가 어느 특정한 유형의 범죄의 재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연구 1의 주된 관심사였던 정박효과의 정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중범죄사건에 대한 양형판단을 할 때에는 경범죄사건에 대한 양형판단을 할 때보다 정박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사건의 경중 뿐 아니라 정박크기(저정박 vs. 고정박)에 의한 정박효과의 차이도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네 개의 조건 중 경범죄사건의 고정박 조건에서 나머지 세 조건에 비해 정박효과가 약하게 나타났다. 이를 사건의 경중으로 나누어 살펴볼 때, 경범죄사건에서는 고정박(7년)이 제시되었을

때 저정박(2년)이 제시되었을 때보다 정박효과가 더 약하게 나타난 반면, 중범 죄사건에서는 정박크기(6년 vs. 18년)에 따른 정박효과의 차이가 없었다. 다시 말해 경범죄사건에서는 사안에 비해 부적절하게 높은 검사구형량(7년)이 제시 되면 정박효과가 약해졌지만, 중범죄사건에서는 사안에 비해 부적절하게 낮은 검사구형량(6년)이 제시되어도 정박효과가 약해지지 않았다.

중범죄사건은 경범죄사건보다 사안의 중대성이 더 크고 무거울뿐더러 재판에서 다루는 내용도 더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더욱이 양형기준이 경범죄사건에 비해 높으므로, 최종 선고형이 피고인, 피해자 및 주변인들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도 큰 파급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양형판단으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안다면 이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즉 판단자들은 중범죄사건에서 인지적 부담, 심리적 책임감 및 압박감을 더 크게 느낄 것이다. 최수형(2011)이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양형판단에 어려움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 중 하나는 형을 결정하며 느끼는 부담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휴리스틱적 사고가 잘 발현되며(Pratkanis, 1989), 검사구형량은 나의 판단으로 인한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신뢰할만한 정보가 된다. 결론적으로, 중범죄사건에서는 인지적 부담과 심리적 책임으로 인해 소신 있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하고 검사구형량 근처의 형량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므로, 경범죄사건에 비해 정박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범죄사건에서 사건에 비해 너무 낮다고 생각되는 검사구형이 제시되어도 정박효과의 정도가 약해지지 않은 결과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 가능하다.

한편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점수를 통해 검사구형량에 따라 사건 자체를 바라보는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 수 있다. 경범죄사건에서는 검사구형량이 낮게 제시되든 높게 제시되든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없었는데, 이 때문에 검사구형량에 구애받지 않는 객관적인 양형판단이 가능했던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범죄사건에서는 검사구형량에 따라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검사구형량이 높게 제시된 조건에서 검사구형량이 낮게 제시된 조건보다 사건을 더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중범죄사건에서는 검사구형량이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따라 판단과정에서 그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고 이것이 최종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2에서는 정서상태와 정박효과의 관계에 대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에 비해 양형판단 시 정박효과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은 사고과정에서 휴리스틱적 처리가 촉진되고,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은 주의 깊고 체계적인 처리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Bodenhausen et al., 1994; Cooley & Nowicki, 1989; Forgas, 1998). 연구 2의 결과는 실제 재판에서 분노정서를 유발시키는 사건에 대해 양형을 판단할 때, 슬픔정서를 유발시키는 사건에 대한 양형을 판단할 때보다 정박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준다. 배심원들이 법관들에 비해 감정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크다는 우려에 비추어 볼 때(박형관, 2012; Weninger, 1994), 국민참여재판에서 강렬한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배심원들의 감정적 판단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완충제도가 필요하다.

연구 3에서는 정박효과를 약화시키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세 조건을 비교했다. 그 결과 검사구형량을 듣기 전 걱정 양형을 생각해보고 최종 결정 전에 주의문을 읽은 사람들이, 주의문만 읽었거나 주의문을 읽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정박효과를 약하게 보였다. 주의문만 읽은 사람들의 정박효과는 주의문을 읽지 않은 사람들과 차이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정박효과에 대한 주의를 주어 객관적 판단을 하려는 동기를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는 정박효과가 감소하지 않았다. 이는 외부에서 제공된 정박점에 대해서는 접근가능성 모델이

활성화되어, 정확성 동기가 있어도 조정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들을 뒷받침한다(Champman & Johnson, 2002; Epley & Gilovich, 2005). 접근 가능성 모델은 정박효과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하여 정박점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연구 3에서처럼 정박점인 검사구형량을 듣기 전에 스스로 걱정 양형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검사구형량 뿐 아니라 스스로 생각한 양형 또한 접근 및 참고 가능한 유용한 정보가 된다. 따라서 제공된 정박점(검사구형량)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정박-조정 모델에 의한 조정과정을 거쳐 정박효과가 약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재판에서 배심원들에게 정박효과에 대한 주의를 주고 교육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으며, 더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후속연구 제안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으나 정박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한 초기연구로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연구 1은 범죄사건을 단순히 경범죄와 중범죄로 나누었고, 연구자의 임의로 경범죄는 절도사건, 중범죄는 살인사건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경범죄와 중범죄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피고인의 성별, 연령 및 직업을 통일하였다. 하지만 범죄사건의 종류는 강도, 사기, 폭행, 성폭력, 살인미수 등으로 더 많고,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및 직업은 굉장히 다양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사법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Desantts & Kayson, 1997).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사건의 유형에 따라, 그리고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라 정박효과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1은 여자 학부생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므로 이 결과가 남성에게도 일반화 가능한지는 알기 어렵다. 황인정(2007)의 연구에 의하면 법정 판단에 있어 남성보다 여성들이 가해자에게 더 엄격한 가치관을 보여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필히 남성들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 2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행되었다. 감정형용사 목록을 통해 정서가 조작되지 않은 참가자들과 총 설문응답 시간이 매우 짧은 참가자들을 제거하였지만, 그럼에도 온라인 특성 상 일부 불성실한 참가자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또한 연구 2에서는 분노정서 조건과 슬픔정서 조건을 비교하였으나 중립정서 조건은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조건과 분노조건에서 나타나는 정박효과의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즉 정박효과의 정도가 분노정서, 중립정서, 슬픔정서의 순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인지, 또는 슬픔과 분노 두 정서 중 하나가 중립정서와 동일한 정도의 정

박효과를 나타내게 하는지 알기 어렵다. 추후에는 오프라인 연구로 중립조건을 추가하여 연구 2의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연구 2의 시나리오에 서는 적정 양형보다 약간 높은 정박점이 검사구형량으로 제시되었고, 분노를 느끼는 참가자들이 더 강한 정박효과를 보였다. 이는 분노를 느끼기 때문에 정 박효과를 많이 저질렀다기보다는, 분노를 피고인에게 이입하여 단순히 높은 양 형을 내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저정박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참가 자들의 기질적인 정서에 대한 사전 고려가 없었는데, 기질적인 우울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 적대감 수준이 높은 참가자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측정하여 통 제해야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한 명의 참가자가 개인적으로 양형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7~9인으로 구성되어 집단수준에서 토의하고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로 유·무죄와 양형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이러한 집단수준의 판단은 개인수준의 판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집단 의사결정은 토의를 통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집단사 고(group think)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Aronson, 2011). 선행연구에서도 집 단수준의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는 집단극화현상에 의해 개인수준의 의사결정을 내릴 때보다 정박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박광배 등, 2005). 또한 중범죄사건 에서 집단수준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는 개인판단을 내릴 때에 비해 양형결정에 따른 부담이나 책임이 분산될 것이므로 본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 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집단수준 양형판단의 정박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연 구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박효과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정박효과가 강하거나 약하게 나타나는 조건을 밝혔으나, 해당 조건에서 무엇이 원인이 되어 정박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연구 참가자

들은 시나리오를 읽고 최종 양형을 결정했을 뿐 아니라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중범죄사건에서는 정박크기에 따라 심각성점수의 차이가 있었고 정박효과는 차이가 없었다. 반면 경범죄사건에서는 정박크기에 따라 심각성점수의 차이는 없었으나 정박효과는 차이가 있었다. 여기에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즉 검사 구형량(정박점)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를 매개로 하여 정박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메커니즘을 검증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범죄사건에서 경범죄사건보다 정박효과가 강하게 나타났고, 경범죄사건과 달리 정박크기에 따른 정박효과의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범죄사건에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추정일 뿐이므로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양형판단의 어려움에는 양형을 결정하는 데 느끼는 부담감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최수형, 2011). 후속 연구에서는 사건의 경중이 심리적 책임감 또는 부담감을 매개로 하여 정박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 메커니즘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3. 종합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법적 의사결정 시 정박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단순한 확인을 넘어서, 정박효과가 항상 동일한 정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또는 더 약하게 나타나는 상황이 존재함을 밝히고, 더 나아가 정박효과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검증한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 2와 연구 3에서는 서면 시나리오 대신 동영상 활용하는 시도를 했다. 기존의 정박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가상의 재판 시나리오를 서면으로 제시하였으나 서면 시나리오로 양형을 판단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몰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영상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서면 시나리오의 한계를 보완하고 직접 재판 공방을 지켜보는 것 같이 현장감과 몰입도를 높였다.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8년, 이제는 시범시행 시기를 지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시점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양형을 판단하는 절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배심원 평결로 인한 오판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아직 전체 재판 건수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비율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참여재판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과 관련된, 특히 배심원들의 판단과 관련된 실증적인 경험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배심원들이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판단오류인 정박효과에 대해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들을 통해 실제 재판에서 정박효과가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상황이 존재하고, 따라서 적절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범죄사건 또는 분노가 유발되는 사건에 대해 배심원들이 양형을 판단할 때 정박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을 인지하고 주의

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범죄사건 또는 분노가 유발되는 사건에서는 배심원들이 최대한 객관적인 판단자로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입장에 감정적으로 크게 몰입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신에 주어지는 증거를 사실에 입각하여 판단하도록 충분히 주지시키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잘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공판시간 중간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여 재판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이는 등, 심리적 부담감과 압박감을 최소화하는 방안들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 3의 결과를 활용한다면 정박효과를 감소시키는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배심원 판단편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으며, 관련된 후속연구들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더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이 더 나은 제도로 발전하고 확대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대성 (2012).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의 양형 참여. 법학연구, 15(1), 185-213.
- 김병수 (2010). 국민참여재판의 중간평가. 형사정책연구, 311-348.
- 김청택, 최인철 (2010). 법정의사결정에서의 판사들의 인지편향. 서울대학교 법학, 51(4), 317-345.
- 박광배, 김상준, 한미영 (2005). 가상적인 재판 쟁점에서의 현역판사의 판단과 모의배심의 집단판단에 대한 인지적 방략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1), 59-84.
- 박미숙, 이정민, 황지태, 김광준, 추형관, 임유석 (2009).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Ⅱ):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참관 및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박형관 (2012). 배심원 양형에 관한 쟁점 검토. 형사정책연구, 41-74.
- 박홍규 (2014). 국민참여재판 이대로 좋은가. 알마
- 박희정, 김현정, 최승혁, 허태균 (2011). '누구'의 생각이니까: 거점효과에서 제공자 신빙성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3), 47-60.
- 박희정 (2015). 판단자의 부정적 감정과 거짓말 판단과의 관계에서 확실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2), 57-70.
- 법원행정처 (2007).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서울: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2014).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정신건강의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서울: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2016). 2008-2015년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서울: 법원행정처
- 안대희 (2010). 심리학 밖의 심리학들: 법적 판단과 심리학. 한국심리학회 연

- 차학술발표논문집, 2010(단일호), 121-134.
- 이지혜, 박우현, 이수정 (2014). 성폭력사건의 피해자 요인이 배심원의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2), 25-43.
- 장효진 (2011). 감정동사 및 감정형용사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9-34.
- 조인현 (2013). 국민참여재판 제도와 배심원의 법적 기능-오판(誤判) 발생의 문제점, 그 원인과 대책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15(1), 259-290.
- 최수형 (2011). 배심원의 범죄사실 및 양형판단에 대한 연구. *범죄와 비행*, 1, 227-250.
- 홍수민, 이수정, 이정현 (2013).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임의명정에 대한 배심원단과 법관의 판단 차이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4), 69-87.
- 한국개발연구원 (2006). 한국형 사회적 자본 실태조사. 기획재정부.
- 황병돈 (2010). 국민참여재판 시행 과정상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한양법학*, 30, 33-61.
- 황인정 (2007). 범죄 피해자와 범죄 판단자의 성별이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107-121.
- Ambady, N. (2010). The perils of pondering: Intuition and thin slice judgments. *Psychological Inquiry*, 21(4), 271-278.
- Ambady, N., & Gray, H. M. (2002). On being sad and mistaken: mood effects on the accuracy of thin-slice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4), 947-961.
- Aronson, E. (2011). *The social animal*. Worth Publishers.
- Blass, T., Alperstein, L., & Block, S. H. (1974). Effects of communicator's race and beauty and of receiver's objectivity-subjectivity on attitude

- chang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1), 132–134.
- Bodenhausen, G. V., Sheppard, L. A., & Kramer, G. P. (1994). Negative affect and social judgment: The differential impact of anger and sadnes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4(1), 45–62.
- Chapman, G. B., & Bornstein, B. H. (1996). The more you ask for, the more you get: Anchoring in personal injury verdict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0(6), 519–540.
- Chapman, G. B., & Johnson, E. J. (2002). Incorporating the irrelevant: Anchors in judgments of belief and value. *Heuristics and biases: The Psychology of Intuitive Judgment*, 120–138.
- Cheng, P. W., & Holyoak, K. J. (1985). Pragmatic reasoning schemas. *Cognitive Psychology*, 17(4), 391–416.
- Cooley, E. L., & Nowicki, S. (1989). Discrimination of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by depressed subjects.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15(4), 449–465.
- Desantts, A., & Kayson, W. A. (1997). Defendants' characteristics of attractiveness, race, and sex and sentencing decisions. *Psychological Reports*, 81(2), 679–683.
- Doob, A. N., & Roberts, J. V. (1984). Social psychology, social attitudes, and attitudes toward sentencing.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16(4), 269–280.
- Englich, B., & Mussweiler, T. (2001). Sentencing Under Uncertainty: Anchoring Effects in the Courtroom.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1(7), 1535–1551.
- Englich, B., Mussweiler, T., & Strack, F. (2006). Playing dice with criminal

- sentences: The influence of irrelevant anchors on experts' judicial decision mak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2), 188–200.
- Epley, N., & Gilovich, T. (2001). Putting adjustment back in the anchoring and adjustment heuristic: Differential processing of self-generated and experimenter-provided anchors. *Psychological Science*, 12(5), 391–396.
- Epley, N., & Gilovich, T. (2005). When effortful thinking influences judgmental anchoring: differential effects of forewarning and incentives on self-generated and externally provided anchors.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8(3), 199–212.
- Epley, N., & Gilovich, T. (2006). The anchoring-and-adjustment heuristic: Why the adjustments are insufficient. *Psychological Science*, 17(4), 311–318.
- Epley, N., Keysar, B., Van Boven, L., & Gilovich, T. (2004). Perspective taking as egocentric anchoring and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3), 327–339.
- Fischhoff, B. (1982). For those condemned to study the past: Heuristics and biases in hindsight.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335–354.
- Fiske, S. T., & Taylor, S. E. (1991). Social cognition. *New York: McGraw-Hill*.
- Forgas, J. P. (1998). On being happy and mistaken: mood effects on the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318–331.

- Forgas, J. P., & Bower, G. H. (1987). Mood effects on person-perception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1), 53-60.
- Guthrie, C. (2000). Framing frivolous litigation: A psychological theory.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163-216.
- Guthrie, C., Rachlinski, J. J., & Wistrich, A. J. (2002). Judging by Heuristic-Cognitive Illusions in Judicial Decision Making. *Judicature*, *86*, 44-50.
- Hafemeister, T. L. (1993). Juror stress. *Violence and Victims*, *8*(2), 177-186.
- Hastie, R., Schkade, D. A., & Payne, J. W. (1999). Juror judgments in civil cases: Effects of plaintiff's requests and plaintiff's identity on punitive damage awards. *Law and Human Behavior*, *23*(4), 445-470.
- Kahneman, D., & Tversky, A. (1984). Choices, values, and frames. *American Psychologist*, *39*(4), 341-350.
- Klayman, J., & Ha, Y. W. (1987). Confirmation, disconfirmation, and information in hypothesis testing. *Psychological Review*, *94*(2), 211-228.
- Korobkin, R., & Guthrie, C. (1994). Psychological barriers to litigation settlement: an experimental approach. *Michigan Law Review*, *93*(1), 107-192.
- Mussweiler, T., & Strack, F. (2001). Considering the impossible: Explaining the effects of implausible anchors. *Social Cognition*, *19*(2), 145-160.
- Nickerson, R. S. (1998). Confirmation bias: A ubiquitous phenomenon in many guis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2), 175-220.

- Park, J., & Banaji, M. R. (2000). Mood and heuristics: the influence of happy and sad states on sensitivity and bias in 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6), 1005–1023.
- Polk, D. E., Cohen, S., Doyle, W. J., Skoner, D. P., & Kirschbaum, C. (2005). State and trait affect as predictors of salivary cortisol in healthy adults. *Psychoneuroendocrinology, 20*(2), 261–272.
- Pratkanis, A. R. (1989). The cognitive representation of attitudes.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 71–98*.
- Rachlinski, J. J. (1996). Gains, losses, and the psychology of litigation.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70*(1), 113–185.
- Robbennolt, J. K., & Studebaker, C. A. (1999). Anchoring in the courtroom: The effects of caps on punitive damages. *Law and Human Behavior, 23*(3), 353–373.
- Schmid, J., Fiedler, K., Englich, B., Ehrenberger, T., & Semin, G. R. (1996). Taking sides with the defendant: Grammatical choice and the influence of implicit attributions in prosecution and defense speech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inguistics, 12*(2), 127–148.
- Semmler, C., & Brewer, N. (2002). Effects of mood and emotion on juror processing and judgments.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20*(4), 423–436.
- Simmons, J. P., LeBoeuf, R. A., & Nelson, L. D. (2010). The effect of accuracy motivation on anchoring and adjustment: Do people adjust from provided anch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6), 917–932.
- Srull, T. S. (1987). Memory, Mood, and Consumer Judgment.

NA-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4(1), 404-407.

- Strack, F., & Mussweiler, T. (1997). Explaining the enigmatic anchoring effect: Mechanisms of selective accessi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3), 437-446.
- Tiedens, L. Z. (2001). The effect of anger on the hostile inferences of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people: Specific emotions, cognitive processing, and chronic accessibility. *Motivation and Emotion*, 25(3), 233-251.
- Tversky, A. & Kahneman, D. (1974).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Science*, 185, 1124-30.
- Weninger, R. A. (1994). Jury Sentencing in Noncapital Cases: A Case Study of El Paso County, Texas. *Urban Law Annual: Journal of Urban and Contemporary Law*, 45(1), 03-40.
- Wright, W. F., & Anderson, U. (1989). Effects of situation familiarity and financial incentives on use of the anchoring and adjustment heuristic for probability assessment.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44(1), 68-82.

ABSTRACT

Juror Judgmental Bias in Korean Jury Trial: Sentencing Demand of the Prosecutor and Anchoring Effect

Yumi Yi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When people make an estimate under uncertainty, they tend to rely on value provided in advance. During decision making, their final estimate is assimilated to the initial value provided ahead. This phenomenon is called “anchoring effect”. The present research examined anchoring effect observed in the law courts. Sentencing decision of jurors in Korean jury trial can be influenced by sentencing demand of the prosecutor. Specifically, This study verified the certain condition in which anchoring effect is observed stronger and examined practical solutions for lowering the anchoring effect. Participants were undergraduate students who were over 20 years old and eligible for juror. Study 1 examined whether gravity of criminal cases and levels of anchor influence anchoring effects. As expected, anchoring effect was stronger in heavier criminal case than in lighter criminal case. In addition, levels of anchor significantly influenced anchoring effect only in lighter criminal cases. When low anchor was provided in lighter criminal

case, anchoring effect was stronger compared to when high anchor was provided. Study 2 examined how state of emotion affected anchoring effects. The results showed that anchoring effect appeared to be significantly stronger with feelings of anger than feelings of sadness. Study 3 examined the solutions that can reduce anchoring effects when deciding sentences in the court. When activation of selective-accessibility model was prevented, anchoring effect significantly decreased. These results can help solve the problems about juror judgmental bias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extension of Korean jury trial.

Keywords: Judgmental bias, Anchoring effects, Judicial decision-making, Juror decision-making, Korean jury trial

부 록 1

경범죄 시나리오



◆ 다음 재판 공방을 실제 상황처럼 주의 깊게 보시고,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이 몇 년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고인(범죄자) : 정00(남), 무직, 31세

- 검사

“피고인 정0씨는 양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트렁크를 열고 14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서울 전역의 주차장 또는 상가에서 6차례에 걸쳐 약 800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또한 정씨는 이미 세 차례의 절도죄로 두 번의 벌금형과 한 번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전과가 있습니다. 형법 제 329조에 의하면 절도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절도는 그 이상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몇 년의 양형을 내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 변호인

“피고인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의 부재와 경제적인 이유로 제대로 교육, 보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성장한 것입니다. 그는 정도 정신지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며,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병적 도벽 증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검사

“환경이 어렵거나 지적 능력이 낮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가게에서 현금과 물건을 훔친 행위 때문에,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오던 상인들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3번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으므로 상습성을 인정하고 추후 재범가능성도 높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2년/7년’의 구형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 변호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와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어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지 말고 무조건적이고 엄한 처벌 보다는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심신미약은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현재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치료를 받고 새 삶을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피고인

“죄송합니다.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 재판은 절도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2년/7년 구형을 주장 하였으며 변호인 측에서는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1) 귀하는 위 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매우 낮다) (보통이다) (매우 높다)

2) 피고인에게 몇 년의 징역형을 내리시겠습니까? (ex: 0년 / 0년 0개월)

()

3)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4) 귀하의 만 나이는?

만 () 세

5) 귀하의 학력은?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 ② 고등학교 졸업
- ③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 ④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중범죄 시나리오



- ◆ 다음 재판 공방을 실제 상황처럼 주의 깊게 보시고,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이 몇 년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피고인(범죄자) : 정00(남), 무직, 31세

- 검사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A씨(남, 39세)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주택 1층에 살던 피고인은 평소 위층에서 나는 소음 문제로 2층에 사는 피해자와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소음을 참지 못한 피고인은 항의를 하기 위해 올라갔고 피해자가 사과를 하며 주의하겠다고 하여 다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소음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부엌칼을 들고 올라가 피해자를 칼로 수 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형법 250조 1항에 의하면 살인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몇 년의 형을 내릴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 변호사

“피고인은 오래된 실업상태로 만성우울증을 겪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고, A씨(피해자)의 두 자녀가 쿵쿵대며 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과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잠을 자지 못한 일이 많았고 이에 여러 번 올라가 얘기를 했으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고 올라간 것은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의를 주었음에도 소음이 도저히 줄어들지 않아 협박을 하려고 들고 갔다

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 검사

“A씨(피해자)는 피고인의 항의가 있을 때마다 사과를 하였고 바닥에 매트를 까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이 워낙 오래되어 방음이 잘 되지 않아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초인종을 누른 후 A씨가 나오자마자 소지하고 있던 칼로 왼쪽 가슴을 3회, 머리를 2회 찔러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살인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발적일 가능성이 있다 해도 이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끔찍한 범행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두 어린 자녀와 부인이 피해자의 죽음을 목격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 할 것입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6년/18년’의 구형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 변호인

“피고인은 이제까지 아무런 폭행이나 폭력 전과가 없는 평범한 시민이었으며, 성실하게 취업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우울증을 겪고 있던 상태에서 소음으로 인한 고통까지 더해져 온전한 변별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현재 피고인은 이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피고인

“할 말이 없습니다... 유족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 이 재판은 살인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6년/20년 구형을 주장 하였으며 변호인 측에서는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1) 귀하는 위 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매우 낮다) (보통이다) (매우 높다)

2) 피고인에게 몇 년의 징역형을 내리시겠습니까? (ex: 0년 / 0년 0개월)
()

3)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4) 귀하의 나이는 만 몇 세입니까?

만 () 세

5) 귀하의 학력은?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 ② 고등학교 졸업
- ③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 ④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부 록 2

재판 애니메이션에 사용된 시나리오

- 판사

“다음 재판 공방을 실제 상황처럼 주의 깊게 보시고,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이 몇 년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범죄자) 임모씨는 31세 남성으로 무직입니다.”

- 검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A씨(28세, 여)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피해자의 음주문제로 피고인의 집에서 크게 다투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욕설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심해진 끝에 피고인은 흥분하고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코와 입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형법 250조 1항에 의하면 살인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몇 년의 양형을 내릴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 변호인

“피고인은 폭행이나 폭력 전과가 없으며, 평소 주변에서 온순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편 피해자는 평소에 음주문제로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었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일이 잦았으며 집착이 심하여 피고인을 정신적으로 괴롭게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이 술을 먹고 온 피해자에게 또 술을 먹었냐고 하자 다툼이 시작되었고, 화가 난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웃에 피해주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고 입을 막은 것입니다.”

- 검사

“목을 졸라 사람을 살해할 때는 잠깐 졸랐다고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눌러야 하며, 의식을 잃고 나서도 한참을 누르고 있어야 신체기능이 정지하고 사망합니다.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이 살해의지를 가지고 범행을 진행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게다가 유족들이 굉장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전과는 없어도 도로교통법 등을 어긴 전과가 3번 있으므로 초범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고 이유가 무엇이랴도 살인은 가장 무거운 죄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20년’ 구형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 변호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해지자 바로 119에 신고를 하였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살해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보호 관찰소 자료를 보면,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피고인

“유족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평생 반성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의 글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조영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밑에서 폭넓은 공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원하는 주제로 학위논문을 쓰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여 다 소화해내지는 못했으나 모든 경험들이 감사하고 소중한 자산으로 남았습니다. 박혜경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수업과 격려를 통해 아이디어가 연구제안서로 만들어졌고 학위논문으로 쓰여질 수 있었습니다. 서수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꼼꼼하게 피드백 해주신 덕분에 부족한 부분들이 메워지고 논문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3개의 실험을 수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와주신 분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먼저 실험 진행할 때 보조로 도와준 동생 이상연, 고맙다~ 그리고 학부시절부터 지적 자극제가 되어준 김상아 언니 늘 고맙습니다. 연구 설계와 논문작성 과정에서 함께 고민해주고 도와주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참가자 수집을 도와주신 맹세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굉장히 수월하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동영상을 제작해준 김민철, 동영상 외에도 시나리오 피드백과 참가자 수집 등 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늘 옆에서 응원해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측정심리 연구실 분들에게 인사 전합니다. 대학원 입학 이후부터 모든 추억을 함께 해준 한우리. 수업과 밤샘, 출장, 국내외 학술대회까지, 학교 안에서든 밖에서든 함께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구소희 언니. 공부도 일도 뭐든지 잘 해내는 언니가 옆에 있어 든든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결 같이 다정하고 온화하신 김혜영 선생님. 선생님을 뵈 때마다 늘 긍정적인 자극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설문 계정을 제공해 주신 신용우 선생님. 법 전

공이신 선생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사소한 질문에도 늘 친절하게 도와줬던 신누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독일에 있는 김지현 언니, 예쁘고 착한 조유정, 보고 싶고 고맙습니다.

묵묵히 지켜봐주시고 믿어주시는 아빠 이한은님, 늘 기도해주시는 엄마 김순화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완벽한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를 주관하셨고, 내 능력이 아닌 절대적인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